

운영규정 개요

기관명	행복한현대요양원/주야간	설치일자	2021.06.01
급여종류	시설급여	입소정원	9명/8명
대표자	전수진	협력의료	구리성심신경외과
주소	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129번길 12-7 4층		
비급여 항목	식재료비/간식비	3,800원(1식)/1,500원(1식/1일)	
	상급침실비용	1인실 100,000원(1개월기준)	
시설규모	건물면적 249.48m2		

구분	침 실	사무 실	요양보 호자실	자원봉 사자실	간호사 실	물리 (작업)	프로 그램실	식당 조리실	화장 실	세면장 목욕실	세탁 실
시설	○	○			○		○	○	○	○	○

시설급여	수급자를 장시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,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
의료서비스	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 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
특별보호	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.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.
배상책임	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중에 입소자의 생명,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르 배상 한다. 다만,제3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

입소계약	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체결 한다.
계약기간	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
계약해지	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 해야 한다
이용료	이용료는 "노인장기보험업법"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.
시설물사용	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원상 복귀 한다.